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44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2020. 10. 26. (월)

검 토 안 건	발 의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	의 원



복지도시위원회

(전문위원 조광현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
지원에 관한 조례안”

검 토 보 고 서

(검토보고자 : 전문위원 조광현)

1. 회부경위

- 제출자 : 김진천 의원 외 6인
- 제출일 : 2020. 10. 20.
- 회부일 : 2020. 10. 20. (의안번호 : 20-147)

2. 제출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
- 다. 사업 및 예산의 지원(안 제5조)
- 라. 자립지원센터의 설치(안 제6조)
- 마. 자립지원협의회 설치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및 제38조(자립지원)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4조(위기청소년 특별지원)

나. 입법예고 : 2020.10.15.~10.19

다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0. 10. 15. ~ 2020. 10. 19.
- 2) 관계법령 : 첨부

5. 검토의견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, 특히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·경제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
-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·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.

-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, 안 제5조에서는 구체적인 추진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의 지원, 안 제7조에서는 자립을 돕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을 정하는 등 총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.

- 아동·청소년 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청소년들은 만 18세에 이르면 대부분 자립 능력의 유무나 자립 상황에 상관없이 퇴소함으로써 복지시설 출신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준비되지 못한 홀로서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.

- 본 조례가 시행되면, 제도적 보장을 통해 보호조치 종료 후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고 세심한 배려와 사회적 지원으로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다만 조례가 시행되면 추진사업 중 주거안정 지원사업, 생활·교육·취업 지원 사업 등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, 우수한 정책 발굴과 적극적 시행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.

[관계법령]

아동복지법

[시행 2020. 10. 8] [법률 제17206호, 2020. 4. 7, 일부개정]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,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3. 22.>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-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1. 28., 2016. 3. 22.>

- 제14조(아동위원)** ① 시·군·구에 아동위원을 둔다.
-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.
-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.
-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- 제38조(자립지원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1.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
 2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(이하 "자산형성지원"이라 한다)
 3.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 4.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 5.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,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청소년복지 지원법 (약칭: 청소년복지법)

[시행 2019. 3. 19] [법률 제15988호, 2018. 12. 18, 일부개정]

제14조(위기청소년 특별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·경제적 지원(이하 "특별지원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, 학업지원, 의료지원, 직업훈련지원,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. 다만,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.

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,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